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415호(號) 1935(昭和 10)년 2월 1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4호(號)

1934(昭和 9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41호(號)(내선만대수소하물연대운송규칙[內鮮滿臺手小荷物連帶運送規則] 제1조[條]에 의[依]한 연대운송[連帶運送]의 범위[範圍]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5(昭和 10)년 2월 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1조(條) 별표(別表) 중(中) (1)철도성선(鐵道省線), (4)철도성선(鐵道省線: 남조선철도회사선[南朝鮮鐵道會社線] 및 가와사키기선[川崎汽船] 여수항로경유[麗水航路經由]) 및 (5)철도성선(鐵道省線)·남만주철도주식회사선(南滿洲鐵道株式會社線) 간(間: 국선경유[局線經由])의 각(各) 항(項) 특수취급사항란(特殊取扱事項欄) 중(中) 「(에히메선[愛媛線]), 우와지마선[宇和島線], 고치선[高知線]을 제[除]함」을 삭제(削除)함.

동표(同表) (2)철도성선(鐵道省線: 북선선[北鮮線] 및 북일본기선[北日本汽船] 북선항로경유[北線航路經由]) 및 (3)철도성선(鐵道省線: 북선선[北鮮線] 및 시마타니기선[島谷汽船] 북선항로경유[北線航路經由])의 각(各) 항(項) 특수취급사항란(特殊取扱事項欄)에 「국선(局線)과 성선(省線) 상호간(相互間)에 하물대금인환(荷物代金引換)의 취급(取扱)을 함」을 추가(追加)함.

동표(同表) (7)철도성선(鐵道省線)·조선철도주식회사사회선(朝鮮鐵道株式會社社會線) 간(間: 국선경유[局線經由]), (9)철도성선(鐵道省線)·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선(朝鮮京南鐵道株式會社線) 간(間: 국선경유[局線經由]) 및 (10)철도성선(鐵道省線)·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선(朝鮮京東鐵道株式會社線) 간(間: 국선경유[局線經由])의 각(各) 항(項) 특수취급사항란(特殊取扱事項欄)에 「성선(省線)과 사선(社線) 상호간(相互間)에 하물대금인환(荷物代金引換)의 취급(取扱)을 함」을 추가(追加)함.